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1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행부 제출)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0. 5. 28.
- 회부일자: 2020. 5. 28.
- 검토기간: 2020. 5. 29. ~ 2020. 6. 5.

2. 개정이유

-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. 9. 28.에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-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,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명칭 변경
(안 제1조~제9조, 제13조, 제15조 및 제16조)
-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- 지난 2018년 9월, 정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¹⁾한 바 있음.
- 동 의안은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위 상위법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)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달서구 조례 각 조문(자구 포함) 역시 개정되어야 하는 바, 이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.
-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현행 조례 조문 중,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또는 “분석평가”로 표기된 자구(字句)를 모두 “성별영향평가”로 개정하였으며, 그 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신설(안 제7조)하는 한편, 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(안 제12조)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(취지)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 바, 특별히 논란이 될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당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(중략) 한편,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 이에 제명을 현행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.”

[관 계 법 령]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